

조기재취업수당 안내-(자영업)

1.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조건(2024.1.1. 이후 수급자격 신청한 자)

- 대기기간(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12개월(이직일 기준 65세이상자는 6개월) 이상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한 경우만 해당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함(12개월 분)
 - 자유직업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다단계·방문판매원, 채권추심원, 개인택시, 개별용달, 퀵배송, 컴퓨터프로그래머, 샵매니저, 자동차딜러 등 프리랜서)로 등록·위촉된 경우에도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12개월 분)
 -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비영리사업(교회, 복지시설 등)의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닌 사업의 경우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개시일로부터 수급종료일까지 잔여급여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1/20이상 남아 있어야 함.
사례) 「90일의 경우 45일 이상」, 「120일의 경우 60일 이상」, 「150일의 경우 75일 이상」, 「180일의 경우 90일 이상」, 「210일의 경우 105일 이상」, 「240일의 경우 120일 이상」, 「270일의 경우 135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함에 유의
- (중요)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사전에 미리 ①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 ② 해당 계획에 따라 자영업 활동을 한 후 다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준비활동 내역으로 1회 이상 반드시 실업인정을 받은 후 그 계획대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만 가능(전산확인) *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①항 2호 적용
-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사업개시일/취업일 기준)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수급자(자영업 폐업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가 아닐 것
-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고 실제 사업 영위 사실을 증빙할 수 없을 경우 지급 불가

※ 위 지급조건 모두 충족 시,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만 65세 이상자는 6개월)이후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자의 경우 창업시점부터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음.)

2.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가가치 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발급)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미해당)
- 세금계산서, 매출 또는 매입전표(월 1건 이상) 등 사업 영위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서류
- 부동산(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직종별 제출 서류 >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의 경우: 위촉증명서, 영업수당에 따른 수당명세서 사본(12개월 분)
- 자유소득자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 수당 임금내역(12개월분), 사업장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증빙서류 등
- 개인택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택시조합비 납부영수증 및 주유 및 (전기 및 가스)충전영수증 등(12개월 분)
- 개인용달의 경우: 개인택시와 상동,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화물운송 조합비 납부영수증(12개월 분)

※ 사업영위 증빙서류는 연속적으로 12개월분이 제출되어야 함.

3. 청구방법

방문, 인터넷(www.ei.go.kr-개인서비스-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청구/첨부자료 스캔하여 업로드), 팩스(051-719-4505) 접수 가능

☎ 051-860-2049(1~6월생)/860-2030(7~12월생) ※전화상담 시간 : 13시~15시

4. 지급액 : $\frac{\text{취업일 부터 수급종료일까지 총일수}}{2} \times \text{구직급여일액}$

5. 유의사항

- 퇴사일 기준 65세이상 이상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 운영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운영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취업신고시 사전신청이 가능함.